

보건복지부의 1997년도 입법추진 계획 및 과제

高京錫 / 보건복지부 법무담당관

1. 서 론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들 한다. 그만큼 업무의 범위가 넓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업무의 성격이 사회복지, 의료보험, 국민연금, 의료 및 식품 등 국민의 건강이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 가난했던 시대에는 의식주문제의 해결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구호사업, 전염병 예방 및 인구증가 억제 등 전형적인 후진국의 보건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복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복지의 질적 수준에서는 국가의 발전수준이나 국민의 복지수요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즉,

생계보호수준이 최저생계비의 90%에 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호수준이 미흡하고 의료보험의 급여범위와 기간이 제한되고 있으며,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의료수요의 증가, 식품위해요인의 범람 및 질병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보건환경에의 대응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앞으로의 입법은 보다 내실있는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균형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국민연금을 조기에 실현시키며, 의료개혁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의약품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1997년중 추진중인 입법계획 및 과제

1997년 2월 현재 보건복지부소관 법령을 보면 정신보건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등 53개가 있으며, 지난 3월에

표 1.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1997년 2월 현재)

(단위: 개)

법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등
53	61	82	80	58	135

는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모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모금된 재원의 배분을 보다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주도의 모금체계에서 민간 단체중심의 모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하였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과 같이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금년 정기국회까지 민생관련 13개의 법률을 제·개정하고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보건복지부의 소관별로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동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등까지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개인 및 단체까지 허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법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고자 한다.

둘째, 현행 『생활보호법』은 소득 및 재산수준이 일정 기준 보다도 낮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생계를 보호토록 하고 있으나, 실직, 질병 및 간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되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생계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표 2. 1997년도 보건복지부의 입법추진 법령

사회복지정책실	식품정책국	의정국	약정국	연금보험국	기술협력관	한방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 생활보호법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 • 식품접객위생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 • 의료분쟁 조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법 •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 대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의료 기술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한의학 연구소법

재산은 있으나 환금성이 낮아 생계가 곤란하게 될 경우에도 동 재산을 담보로 생계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생계보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녀나 친척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자활공동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재단도 설립토록 할 계획이다.

셋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묘지난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묘지의 단위면적을 축소하고 묘지의 사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화장 및 납골제의 확대 보급을 위해 공설납골당의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종교단체 등의 납골시설 설치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납골시설의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불법분묘 등의 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묘지를 포함한 장묘문제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오랜 관행으로부터 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묘지난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나갈 예정이다.

넷째,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장기이식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장기의 매매행위를 근절시키며,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법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동법에서는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이식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뇌사판정을 위한 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며,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요건과 장기기증에 동의할 수 있는 가족 및 유족의 범위가 정해질 것이다. 또한 장기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이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장기이식 사업의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하여 장기이식정보센터를 설립하되 장기이식대상자의 선정은 반드시 정보센터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법의 제정과정에서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따른 법적인 사망문제와 인간생명존중에 반한다는 일부 종교계의 신중론 등이 제기되고 있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개정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하여 과다규제된 내용을 완화하는 한편, 마약류의 불법 유통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마약류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민간차원의 홍보·계몽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법정단체화 하고자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약류 취급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포장단위마다 붙이도록 되어 있던 수입인지를 무료로 하고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의 교부수수료도 폐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마약남용 예방활동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마약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하여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반면에 마약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와 대마를 불법으로 취급·소지·사용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액을 대폭 늘리고, 마약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도 증액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섯째,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토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에 공익대표, 의료인 및 소비자대표로 구성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의

료분쟁시에는 이 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며, 분쟁시의 효율적인 피해배상을 위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치·운영토록 하되 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처벌의 특례인정은 특정제층에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배상과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일곱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하여 2000년대에 성장주도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보건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즉,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을 개편하여 정부가 출연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 형태의 『보건의료기술정책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며, 보건의료정보의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정보의 생산·유통·활용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건의료정보진흥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여덟째,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농어민 등만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토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국민연금을 확대적용함으

로써 전국민연금제도가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아홉째, 현행 『식품위생법』을 개편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과 『식품접객위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식품안전업무와 식품접객업소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식품의 수거·검사 책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 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하며, 식품 위생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품목별로 『안전책임감독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풍속사범업무와 위생관리 업무의 한계도 분명히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의학연구소법』을 개정하여 한의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동 연구소를 『한의학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동 연구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보건복지부의 추진과제 및 대응방향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발전의 목표를 경제에 집중시켜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증진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총생산규모면에서 세계 11위에 이르고 있으

그 동안 국민에게 가해졌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를 하되, 국민보건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오히려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며, 2000년대에는 10위권내로 진입될 전망이다도 불구하고 복지부문에 있어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우리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국에의 진입을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수준에 걸맞는 복지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입법도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내실있는 복지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건산업을 육성하여 보건복지업무도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발전 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동안 국민에게 가해졌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를 하되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오히려 강화를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은 세계가 어울어져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현실도 감안하여 식품 등의 각종 규격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